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점용료 반환 기준 제시

- 이미 납부한 점용료 환급과 관련해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규정 개정 (안 제8조제4항)

나. 점용료 반환 대상 제시

-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규정 신설 (안 제8조제4항제3호)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를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 ③ (생 략) ④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 하지 아니한다. <u>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u> 1. · 2. (생 략) <u><신 설></u>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 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 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 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u> 1. · 2. (현행과 같음) 3. <u>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u>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관 실·과		공원녹지과
입 안 자	과 장	강 용 구
	담 당	서 춘 희
	담 당 자	이 혜 진 (480-5557)